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4. 11. 01.)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펀드 코드: 54837)

투자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KB자산운용(주) 는 이 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등급평가는 KB자산운용(주) 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외부평가기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객관적인 등급평가는 아닌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 또는 운영하는 법인 등에 출자, 용자 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분류	투자회사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폐쇄형(환매금지형) / 추가형(추가모집이 가능)		
투자비용	(주1)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주2)		
운용전문인력	(주3)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style="color: red; margin-top: 10px;">※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주요투자 위험	(주4)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및 구주매출 주식에 대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건 공모에 참여하여 회사에 투자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 제

매입 방법	<p>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한 청약 을 통해 매입 가능</p> <p>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회사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매매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거래 가능</p>	환매 방법	<p>3항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 투자기구로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음</p> <p>다만, 상장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매입과 매도가 가능함</p>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가격 산정방법: 순자산가치(NAV)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발행주식수 · 기준가격 공시방법: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 · 참조사항: 회사의 순자산가치 총액과 주당 순자산가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 및 향후 회사 가치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과세	(주5)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KB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2167-82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kbam.co.kr)		
모집기간	2024년 11월 18일 ~ 2024년 11월 19일	모집·매출 총액	23,809,524주 200,000,001,600원(예정)
효력발생일	효력발생 전	존속 기간	설립일로부터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산일까지
판매회사	금번 상장공모와 관련하여 KB증권(주) , 키움증권(주) , 대신증권(주) 가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참조	회사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및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회사의 주식 외에 별도의 종류(Class)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1)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동종유형 총 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 · 비용	총 보수 · 비용(피투 자 집합투 자기구 보 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집합투자 기구 (클래스 해당없음)	0.65	-	0.02	0.02	0.69	-	-	0.69	0.69	-
지급시기	매분기말 일의 익 영업일	-	매분기말 일의 익영업일	매분기말 일의 익영업일	-	해당없음	-	-	-	-

주1) 집합투자업자보수: 회사의 정관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회사는 회사의 투자운용에 대하여 운용보수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매년 각 분기가 종료되는 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그리고 12월31일을 기준으로 자산운용위탁계약서상 계산방법에 의거하여 산정 및 지급되며, 약정보수는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2) 수탁회사 보수는 자산보관회사 보수를 의미합니다.

주3)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 외에 별도의 종류(Class)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비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4) 총보수 및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의 경우, 회사는 재간접펀드가 아닌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총보수 및 비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기 간	최근 6개월 (2024.01.01~2024.06.30)	최근 1년 (2023.07.01~2024.06.30)	최근 2년 (2022.07.01~2024.06.30)	최근 5년 (2019.07.01~2024.06.30)	설정일 이후 (2006.01.24~2024.06.30)
집합투자기구	9.02%	10.60%	10.23%	9.45%	6.99%

주1) 2024년 상반기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이익배당금을 기초 자본금으로 나눈 후 연환산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주2) 그 외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이익배당금을 평균 자본금(각 반기별 기초 자본금의 평균)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중평균수익률입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과세 전 수익률이며, 명시된 각 기간별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투자시점의 수익률과는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3)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특별자산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성훈	1973	상무보	17개	60,370억원	-	-	-	-	17년 10개월
이주현	1979	선임부장	17개	60,370억원	-	-	-	-	8년 3개월

주1)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순자산 기준) 및 경력사항은 2024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회사 성과 포함)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투자원본 손실 위험	<p>회사는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중개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지 아니합니다.</p>
일반위험	<p>(1) 주가가격의 변동 위험(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 회사는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 및 도로 수요 등에 따라 수취 현금흐름이 저하되어 주식의 가치가 공모가 이하로 하락하거나, 회사의 투자 대상 인프라 관련 투자자산의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국내외 증권시장의 변동에 따른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중개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지 아니합니다.</p> <p>(2)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인프라투융자사업은 국내외 경기 변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침체는 국내 물동량 및 교통수요를 감소시켜 도로 통행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각 시행법인의 현금흐름 및 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 교통량 대비 실적 교통량의 저하는 향후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에서 창출되는 배당 및 청산배당 등에 영향을 줌으로서 회사의 현재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금액 손실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p> <p>(3) 전염병 등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1일 처음으로 발생이 확인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경보를 기존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선포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역시 COVID-19 사태 이후 충격을 받았으며, 하락 및 상승을 번갈아 기록하면서 증권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COVID-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및 이동 제한으로, 회사가 투자 중인 일부 고속도로 등의 통행량에도 일시적 감소가 있었습니다. COVID-19는 현재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국내에 경제적인 충격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COVID-19 외 타 감염병 유행 등 통행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미래 현금흐름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p> <p>(4) 금리 변동 위험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는 총 1,708억원 규모의 자금을 사채 및 차입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모집합투자구에 해당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차입 및 사채 발행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나, 상장 이후에는 동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의 100분의 30 규모까지만 차입이 가능합니다. 상장 후 예상 차입 한도는 2,594억원으로, 금리 변동에 노출될 최대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향후 위 법령 상의 차입 및 사채 발행 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회사의 차입 및 사채발행한도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5) 신용위험(부도위험) 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부채총계는 약 1,824억원으로, 이 중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차입부채는 1,708억원입니다. 회사의 차입 조달 능력은 대출 만기 시점의 회사의 신용도, 정부의 인프라 자산 관련 정책, 회사의 투자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현재 차입금 규모와 예상 차입 규모 및 미래 투자법인들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등을 고려 시 회사의 재무 유동성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 등에 의해 시장 유동성이 부족해져 차환이 불가능하거나 신규 차입 조달이 어려울 경우 회사가 유동성 위험(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6) 배당 자원 부족에 따른 위험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투융자회사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투자회사이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배당금만큼의 소득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지급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회사는 설립 이후 2023년 말까지 모든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 총액만큼을 배당으로 지급해왔으며, 향후에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금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신규자산 투자시 취득자금 일부를 차입 조달할 수 있으며, 차입금의 증가는 자산취득을 통한 수익(현금흐름) 창출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가 변동될 경우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이익 및 배당 가능 재원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는 후순위 대출금 및 보유 지분 등 투자자산에서 창출되는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을 주요 배당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계획 상 목표 배당수익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기 예상 배당금액 및 예상 배당은 각 사업계획 상 회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배당금액 및 예상 배당수익률은 이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인프라 자산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거시경제 충격으로 인한 투자법인 현금흐름이 영향을 받을 경우 배당 수익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1) 주주관청 및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 미이행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총 5개의 사업시행법인(이하 "투자법인") 모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주주관청과 체결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주주관청이 사업자에게 필요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해당 주주관청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 주주관청의 재정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법인의</p>

사업위험	<p>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2) 관련 법률 위험 회사가 투자한 총 5개의 투자법인 모두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 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법 등 회사와 회사의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회사의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유료도로법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고, 이는 투자사업 중 민자도로사업의 비중이 큰 회사에 향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3) 주주관청의 명령 및 처분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총 5개의 사업 모두 민간투자사업이며, 주주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및 실시협약의 당사자로 감독·명령, 사업의 중도해지 및 공약처분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민간투자법상 명시된 제한적인 주주관청의 감독 및 명령 권한을 주주관청이 재량에 따라 폭넓게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최근 시행된 개정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거나 주주관청의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주관청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비록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도록 실시협약상 규정되어 있지만,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시행자의 채무이행, 다른 의무 수행 또는 회사 투자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p> <p>(4) 주주관청의 통행료 인상의무 미이행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5개의 유료도로 사업 관련,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여 혜택을 받는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통행료를 협약통행료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정의된 원칙이나, 주주관청의 장 또는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에 따라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징수 통행료와 협약통행료간의 차액이 커질수록 주주관청이 징수통행료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주주관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할수록 주주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분쟁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 역시 유류비, 차량가격 및 차량유지비용, 인구조가, 자연재해의 발생, 운전을 어렵게 만드는 기상 조건,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관련 법규 및 규제, 일반적인 경제환경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동 사업시행자에 투자하는 회사의 수익성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5) 경쟁 시설 신설 위험 회사가 투자한 유료도로 사업 중 현재 경쟁교통시설의 신설 가능성이 파악된 사업은 산성터널 및 용마터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쟁도로 개통시 통행량 감소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실제 개통시 예상치 못한 교통량 하락 등으로 회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 중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및 수원순환도로(주)의 유료도로 실시협약은 경쟁도로의 신설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3개 투자법인은 경쟁도로 신설에 따른 보상이 실시협약 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보상 규모가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니 투자 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6)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이 대상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수리 또는 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은 당초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 금액이 당초 추정치를 상회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은 회사가 사업시행자에 제공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투자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들의 경우,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은 사업시행자가 채무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와 관련 정부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해지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들께서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p> <p>(7) 업무 위탁 관련 위험 회사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행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집행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자신을 운용, 관리하며, 향후에도 집행투자업 인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행투자업자가 집행투자업 인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다른 집행투자업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p>
	<p>(1) 투자법인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법인들은 회사를 포함한 대주주에게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각 투자법인이 채무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투자법인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법인이 관련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수리 또는 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이 당초 추정치보다 클 수 있으며, 이런 추가적인 비용은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및 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법인의 현금흐름이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영향을 받아 악화되거나, 기타 차입계약조건을 불이행하게 될 경우 투자법인은 채무 전체 혹은 일부를 재조달하거나 추가적인 조달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금재조달이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 투자법인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된 채권자들이 투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이러한 투자법인에 대한 회사의 투자자산 가치가 하락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 채무상환 및 이익배당 능력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2) 투자법인 관련 의사결정 영향력에 따른 위험 회사는 기투자한 5개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법인 또는 해당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채무 및 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투자법인들의 경영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투자법인 일부에는 다른 투자자들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다른 투자자들은 회사와 그 투자 목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투자법인들의 경영, 배당, 이자지급, 기타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력만 행사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회사위험</p>	<p>(3) 투자법인 운영성과 관련 위험 도로 운영 사업시행자들의 수입은 실시협약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수입에 일부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통행료는 관련 사업시행자와 정부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시협약상 도로 통행료는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통행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물가 상승률, 교통량 등과 같은 실시협약 외부요인들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정부 당국은 향후에 통행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사업재구조화 또는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유료도로 사업은 주무관청의 최소수입보장 여부, 보장 수준 대비 실제 운영 실적, 실시협약기간 대비 보장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교통량 및 통행료 수입에 영향을 받아 실적이 악화되어 후순위 이자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영업 및 재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4)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종료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실시협약 상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전 받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조항이 존재하며, 2020년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인화된 요금분에 대해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수입차액을 매 분기 보전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협약 상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분을 차기년도 주무관청 재정지원금에 반영하여 분기별로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이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의 경우 2026년 2월에 종료 예정이며, 대구부산간고속도로가 현재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최소운영수입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수입 보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최소운영수입보장 종료시에는 수입 총금액이 이전 수준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법인은 선순위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선순위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예정이나, 선순위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이 지연되거나,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 종료 이후 예측과 달리 통행료 수입이 저조한 경우 등으로 투자법인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5) 분배금 지급 관련 위험 안정적인 주주의 투자수익률 유지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배당소득공제(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대상이익에서 공제)를 위한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자금소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관에 의거 주주들에게 배당 또는 이익과분배의 형태로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어, 주주의 투자수익률 유지를 위하여 당기 순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분배금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분배금 지급을 대신하여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회사의 투자자산인 대출금 및 지분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원본상환금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손실 및 대출채권 평가이익은 회사의 투자대상 중 하나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지분증권 및 후순위대출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진행하며 발생한 일시적인 평가이익이며, 평가이익을 제외한 이익 및 원본 전액을 배당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로부터 수취하는 원리금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위 평가 이후 후순위대출 이자로 인식하던 현금흐름 일부를 후순위대출 원금상환으로 변경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회계기준 변경 전 세무상 취득가 기준 원금에 해당하는 회수금액은 신규자산 투자 및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 예정이며, 회계기준 변경 전 이익 대부분은 회계상 이익분배금과 함께 주주 배당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배당금은 결산 전 중간배당금으로, 배당 후 잔여현금 일부는 2024년 결산 배당금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법인 현금 유입 지연이 지속될 경우 회사의 영업적, 재무적 악영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타 투자법인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여 이자수익의 현금흐름과 회계상 인식되는 이자수익 간 기간불일치 이슈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유동성 수요는 증대될 수 있으며 재무적 부담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p> <p>(6) 주무관청, 기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의무 관련 위험 실시협약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필요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자에게 필요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해당 주무관청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 주무관청 재정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필요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투자법인의 운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투자법인의 전반적인 재무상환 능력을 악화시키고, 회사가 해당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자 및 원금, 배당금액이 줄어들어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7) 건설중인 자산 관련 위험 회사가 건설단계에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유료도로, 교량, 터널, 철도와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자연 재해, 설계 변경, 그리고 지역사회나 종교, 환경 단체와 같은 특수 이익집단의 반대 등의 잠재적인 위험이 뒤따릅니다. 비록 대다수 위험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시공사 또는 관련 정부에게 이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위험들이 발생할 경우 공사지연, 수익 손실과 비용초과 등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투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완공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는 관련 정부 당국에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비록 시공사는 통상적으로 건설지연으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러한 배상은 사업시행자의 모든 의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들은 건설지연으로 심각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p> <p>(8) 차입금 관련 위험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라 상장 후 자본금의 30%까지만 차입 또는 사채발행이 가능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차입부채는 총 1,708억원(원금 기준)으로, 이는 사채 100억원 및 차입금 1,608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차입부채 1,708억원은 자본금 대비 약 22.7% 수준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 한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적절한 재무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자본금 규모가 약 8,651억원으로 증가 시 차입 또는 사채발행 한도가 증가한 자본금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신규자산 투자로 인해 차입부채가 차입한도까지 증가하거나 관계법령 변경으로 인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 한도가 증가되는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9) 소송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 중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교통상황용역근로자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사건, 관할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불이행과 관련한 행정사건(과태료),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 총 3건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① 2020년 2월 20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하도급 관계인 대보정보통신의 근로자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피고)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와 임금차액 확인 및 청구를 구한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②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2</p>
-------------	--

	<p>020년 3월 11일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 220명을 직접고용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총액 22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20년 5월 20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1심이 계속 중입니다. ③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양산지청장은 2019년 12월 11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 220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지시하는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해당 시정지시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시정지시는 처분성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되었고, 관할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검찰로 송치되어 2024년 5월 22일 공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에 추가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투자법인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10) 투자자금 조달 불확실성 위험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자금 조달 및 집행은 추가적인 증자, 채권 발행 또는 차입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투자대안의 유효성, 시기, 그리고 규모 등의 사전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민간투자법상 회사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회사 자본금의 30%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차입금의 사용목적은 투자 및 운영자금에 한합니다. ③ 매년 분배가능이익 또는 세무상 이익 중 더 큰 금액의 수준에서 분배하는 회사의 현 분배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면 투자집행을 위한 여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④ 시간적인 제약조건 내지는 발행조건 상 투자자의 수요부족으로 회사는 필요로 하는 물량의 주식이나 사채 발행을 못할 수 있습니다. ⑤ 시장여건이나 회사의 사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회사의 투자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p> <p>(11) 집합투자업자 변경 관련 위험 2022년 8월 29일에 추가로 개정된 회사와 집합투자업자간의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조항에 따라 회사는 60일 전 사전 서면통보에 따라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회사가 집합투자업자의 해산, 계약의 중대한 위반, 관계법령 위반, 관련 수탁회사와의 업무협조 실패 등 업무 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거나, 계약상 권리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해지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에게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12) 회사의 합병 및 피흡수 합병 제한 관련 위험 자본시장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만 합병 또는 피합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합병 및 피흡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투자 포트폴리오 가치의 증대를 이루지 못하고, 관련 거래에 따른 주주의 투자가치 증대 기회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p> <p>(13) 회사의 존속기한 관련 위험 회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5개 민간투자사업(대구·부산간고속도로, 수석·호평간도로, 용마터널, 상성터널,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에 투자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에 따른 해당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시 사업시행법인(SPC)이 소멸되는 구조이므로, 현재 투자자산 기준 회사는 2050년 이후 회사 정관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산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신규 투자를 통해 사업시행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존속기한은 마지막 사업시행법인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이후 해산될 수 있으나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p> <p>(14) 투자회사의 해산 관련 위험 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50억원)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최저 순자산액 미달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해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1) 상장 이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주식의 가격은 국내 경기 상황, 인플레이션 및 금리 변동, 주식시장 수급 상황 및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적인 사건 등 외부 요인과 회사 관련 지표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기한 요인 및 거래 부진 등의 사유에 따라 환금성이 낮을 수 있으며, 추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p> <p>(2) 지분 희석 및 주식가치 희석에 따른 위험 회사는 향후에도 신규 투자자산 취득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 이후에도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입 한도가 존재하는 인프라투자회사의 특성 및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여야 하는 투자회사의 특성이기 인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지분 희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통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투자자산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주식가치의 희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지분 희석 및 주식가치의 희석화에 따른 위험을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p> <p>(3) 이해관계 상충 관련 위험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발기인들에 의해 지명되었고 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합니다. KB자산운용(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법인이사로 선출되었으며, 동법과 회사의 정관규정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결이 어려운 이해 상충 관련 사항이나 그에게 주어진 특정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회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에게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p> <p>(4) 투자대상 선정 관련 위험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인 KB자산운용(주)는 동사 내규에 의하여 투자대상 자산 선정시 자체적 투자심의기구인 대체투자위원회를 통해 투자 수익성,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점검 등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투자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 자산편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실제 투자 이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한 투자 수익성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에게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p>

기타위험	<p>(5) 신규 사업에 대한 경쟁 심화 관련 위험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하는 사업시행자에 투자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 다른 컨소시엄 및 회사와 경쟁을 합니다. 대형 건설사와 금융 투자자 등이 포함된 경쟁자들은 사업에 임찰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풍부한 금융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조건들을 걸고서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회사는 사업시행자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회사가 과거에 획득했던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회사의 경쟁자의 일부는 회사가 자산운용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운용보수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추가적인 사업시행자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유리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회사는 사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달성 못 하거나 회사의 투자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6) 규정 혹은 협약의 불이행에 의한 법적 제재 관련 위험 사업시행자들이 관련 규정이나 실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들은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당하거나 더 나아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모든 투자는 정부기관에 의한 규제를 받는 사업시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들은 그 해석이나 구속력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한 정부 허가,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들이 관련 규정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따르지 못한다면, 이들은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당하거나 해당 사회기반시설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박탈 당할 수 있으며, 또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동시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의거한 것인 바, 그 실시협약이 현금흐름과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사업시행자의 자산운용전략에 제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실시협약은 일반적인 상업계약보다는 정부 쪽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는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는 실시협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시행자의 채무이행, 다른 의무수행 또는 회사 투자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부가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 이외에도 이러한 사업시행자들의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와 정책을 변경하거나 강화하는데 있어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이 사업시행자들의 운영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p> <p>(7) 투자자산 관련 불가항력 및 기타 위험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 또는 향후 운영하게 될 자산의 경우 인프라성 자산의 특성상 교통사고, 화재, 홍수,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인재에 속하는 테러 등의 위험, 설계나 공사의 결함, 경사도 예측 실패, 교량과 터널 붕괴, 도로 함몰, 노동 쟁의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사건들에 의해 방해 받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자산의 운영이 이러한 사유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거나 해당 사업시행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유지비용과 복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투자한 모든 사업시행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를 제외한 전쟁, 테러 등의 불가항력적 위험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의하여 부분되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회사의 영업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금으로 손실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가 가입한 보험청구액이 유료도로, 터널 등에 대한 설계, 공사, 유지의 하차나 또는 이로 인한 수입 감소와 비용 증가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기에 충분할 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8) 국가신용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권은 정부 당국에 의해 부여 받은 것이며, 관련정부 당국이 고유의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실시협약 하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등의 특수한 위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들의 영업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당국자에 의한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또는 법에 반하는 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p> <p>(9) 대리인 및 이해상충위험 회사는 서류상 회사로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대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위탁회사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나 역량부족과 업무 태만이 나타날 경우 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독자적인 업무 및 이익추출 활동을 더 우선시 할 경우 회사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10) 집단소송 관련 위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합계 지분율이 총지분의 0.01% 이상이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관련 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5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한 명 이상의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 거래 관련 집단소송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의 관심과 자원을 회사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p> <p>(11) 소수주주권 관련 위험 본 공모 이후 회사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국내 법에 의하면, 상장된 인프라투자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i) 해당 인프라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ii) 이사가 인프라투자회사의 정관, 관련 법률이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x) 인프라투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y)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의 해임이 인프라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이들에 대한 해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z)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명령 또는 인프라투자회사의 사업이나 재정 상황을 검사하기 위한 감사인의 선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와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회사 이사회가 결의한 전략의 시행을 방해할 경우 회사의 사업과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12) 상장 지연 또는 실패 관련 위험 공모 자금 납입일 이후 회사가 상장 신청 시 상장요건에 부합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보통주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 보통주의 유동성 및 시장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13) 미래 예측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회사의 현재 예측을 토대로 한 미래 예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에 언급된 회사 사업 관련 위험 및 기타 요인들로 인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미래 예측에 대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위험 및 기타 위험과 관련된 일부 기업정보공시는 그 특성상 예측에 불과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하나 이상 현실화되는 경</p>
------	--

	<p>우, 실제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 추정치, 예상치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 예측 자료들은 본 증권신고서 기준일자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회사 또는 회사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미래 예측에 대한 내용에는 본 부문에 기재된 유의사항이 적용됩니다.</p> <p>(14) 일반청약 배정 방식에 따른 위험 금번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에 있어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 대하여 비례배정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15)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 기타 고려사항 회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p>
--	--

(주5)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투자회사 및 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적용되는 본문서 작성일 현재의 관련 세법 규정을 요약한 것으로, 투자자의 과세 문제에 관한 법률 또는 세무의견은 아니므로 회사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투자와 관련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각자 전문가의 자문 및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회사는 법인세법상 내국영리법인으로서 9.9% 내지 23.1%(소득할 주민세 포함)의 일반법인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을 가산·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배당 금액은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에 공제(배당소득 공제)됩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인주주

- 국내 거주자

거주자인 개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

로 원천징수 됩니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연간이자 및 배당소득(투자회사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포함)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개인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 따라 투융자집합 투자기구전용계좌를 통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는 투자금액 1억원 한도에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 국내 비거주자

회사는 국내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세로 배당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2%와 당해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비거주자는 회사에게 「소득세법」 제156조의6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회사를 비롯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주주

- 내국법인

내국법인 주주인 경우 배당금은 법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내국법인 주주가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법인

회사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2%와 당해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외국법인은 회사에게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회사를 비롯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주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2%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22%와 당해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회사를 비롯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가 당해 회사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11%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양도차익의 2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중 낮은 금액이 과세됩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상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의 "비과세·면세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인 경우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의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 개인주주

[개인거주자가 2025년 1월 1일 전에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개인거주자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말합니다. 즉, 주주 1인과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i)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그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 주식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또는 (ii)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장외에서 양도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투자회사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 그 외의 경우에는 22%(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27.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3%(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0%)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35%의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음)가 과세됩니다. 회사 주식 관련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경우 주식 양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3) 내국법인 주주

내국법인 주주는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연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9.9%~26.4%, 지방소득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내국법인인 주주가 받는 배당금액 및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고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증권거래세(주식양도거래에 부과되는 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3%(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에는 0%)의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0.1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므로 양도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고자, 동법 제27조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투자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 전용계좌” 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금융투자소득 신설 및 개정안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 2020.12.29.)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었으며,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재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아닌 거주자인 개인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비과세되나,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2024년 7월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것으로 발표된 바 있으므로, 추후 확정되는 개정 세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과세방법, 세율 등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회사(www.kbif.co.kr)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회사(www.kbif.co.kr) 홈페이지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회사(www.kbif.co.kr) 홈페이지